

# Ask.koreadaily.com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 Q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

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

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

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 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91-9980

#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보는 신문!



- 심층 기획기사 : 80여명의 베테랑 기자들이 취재 보도합니다.
- 수준높은 칼럼 : 좌우 균형을 갖춘 한인사회 최고의 논객들이 집필합니다.
- 차별화된 섹션 : 종교, 레저, 교육, 부동산 등의 알짜 정보가 넘칩니다.
- 생생 생활정보 : 경제, 이민, 의료, 여성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듭니다.

The JoongAng  
The Korea Daily

Lic. oE49438  
WWW.BLUEZONEINS.COM

푸른 신뢰를 드리는 **블루존보험**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은퇴연금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생명보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우혜경 c 818.395.6999 o 213.487.4848 **BlueZone** INSURANCE SERVICES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